

# 2019년도 제2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## 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12. 4.(수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 - 심의위원 : 김경숙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정인 위원, 박재화 위원, 최현용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## 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5건(안건번호 제2019-158674호~158723호)
 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### 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상기 안건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저작권법 133의 3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
다만 이미 전송중단 또는 삭제된 경우,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할 것임
- B 위원 : 이번 심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모니터링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 복제전송과 관련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조의3에 따라 ☆☆☆☆, ○○○○, ◇◇◇◇, ■■■■, ▼▼, ◎◎◎◎◎, ◆◆◆◆와 같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85건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인정되고 이미 조치를 스스로 취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여야 할 것임
- C 위원 : 본 심의에 상정된 50안건은 85개 저작물의 불법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전송하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다. 채증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때,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게시자에게 저작권 법에 의해 시정 조치 하는 것이 적절함.
- D 위원 : 본 대상 안건 85건의 복제물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웹하드형 온라인서비스에 게시된 것들로서 현재 상영되고 있는 최신 영화와 최신 음원들임. 게시를 한 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 등 받았거나 하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. 또한 영상물 및 음원들은 모두 데드카피의 복제물들로서 원저작물의 본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임. 따라서 복제 전송의 중단 및 삭제의 시정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다만 이미 삭제된 복제물의 경우는 경

고의 시정권고로 충분할 것임.

2019년 제279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 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12. 13.

분과위원장 김경숙

위원 박정인

위원 박재화

위원 최현용